

◆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-2822호

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 열람공고
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최초 지정된 용산구 이촌동 일대 이촌아파트지구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을 준용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합니다.

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10월 12일

서울특별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
신설	①	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용산구 이촌동 일대	-	증)33,892.7	33,892.7	-

나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다.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라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결정 : 변경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2. 관계도서 : 생략 (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)

3. 열람기간 :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(2023.10.13. ~ 2023.10.26.)

4.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기관

-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 (☎02-2133-7146)
- 용산구 도시계획과 (☎02-2199-7412), 주택과 (☎02-2199-7362)

5. 기타사항

-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‘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안)’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서울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→서울

소식 → 공고 →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]

- 열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(☎02-2133-714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